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정강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도입 〉
■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49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9. 11.
3. 회 부 일: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을 특정강력범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일정 요건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규정¹⁾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15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18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

상자는 제14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

<신 설>

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에 따른 송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신 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5항, 제6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특정강력범죄 경력정보
2. 특정강력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에 대해서

<신 설>

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 통지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와 같

다.

1.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2.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

④ 법원은 제2항이 적용(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⑥ 법무부장관은 제17조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

<신 설>

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
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
록대상자: 3개월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
록대상자: 1년

제19조(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
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
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
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
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
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
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
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
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특정강력범죄
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신 설>

<신 설>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제18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2. 제19조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특정강력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제14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제18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신 설>

<신 설>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특정강력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특정강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신상정보 등록 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u>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u>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u>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u>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u>
--	---

2.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요

1)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 입법연혁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대상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로써 처음 도입되었음.²⁾ 이어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동법에 옮겨 규정되면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졌음.³⁾⁴⁾

1)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처벌법 제3장(제42조부터 제49조의2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73233호)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는 계도문 형식의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상습적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형태의 공개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상습적 성폭력범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만큼, 보다 상세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열람을 통해 범죄자 본인의 범행억제효과를 유도하고 정보열람자들이 미리 범죄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일응 타당하다”고 보았음.

3) 해당 법률은 제안이유에서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2)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취지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⁵⁾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음.

즉, ①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성범죄 행위 시 10~30년 동안 정부 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의 일반 범죄예방 효과가 있고, ②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 시 등록된 신상정보로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성범죄를 억제하며, ③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성범죄 발생 시 업데이트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로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범인 추적 및 검거를 용이하게 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임.⁶⁾⁷⁾

4) 2010년 제정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면서,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였고,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정보로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정보까지 요구하는 등 구 청소년성보호법보다 더욱 엄격해졌으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화되었음[유창훈, 형사제재수단으로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4호(2019.11.), 190면].

5) 성폭력처벌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이하 생략)

6)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인용(<https://www.moj.go.kr/moj/171/subview.do> 2024.10.23.최종방문)

7) 헌법재판소 2014. 7. 24. 2013헌마423·426(병합) 결정의 재판관 7인의 합헌의견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폭력범

3)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내용

(등록대상자) 성폭력처벌법은, ①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2조(강도강간죄의 미수범에 한정)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② 위 ①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③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5조(미수범)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

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에는 의문이 없다.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한바 있음.

된 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 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 17조제2호(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 등)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⑤ 위의 ① 내지 ④와 같은 성폭력범죄(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42조제1항 본문).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등)·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 등)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함.

(등록대상자 통지 및 신상정보 제출 등)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지하고(제42조제2항),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등록대상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자는 변경정보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하거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50조제3항제1호).

(등록대상자 정보 등록 및 보존·관리)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고(제43조제3항),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신상정보 등과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경력 정보 등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며(제44조제1항), 최초 등록일로부터 등록기간(30년/20년/15년/10년) 동안 보존·관리함(제45조제1항).

(등록정보 배포, 폐기 등)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는데(제46조제1항),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등록대상자가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45조제2항). 한편,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공개·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제48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50조제1항제1호).

(공개명령) 법원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등록기간 동안 등록대상자의 정보[성명, 나이,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포함),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제47조제1항).

개정안은 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음.

4)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구 성폭력처벌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합헌) 결정⁸⁾을 한 이래 최근까지 다수의 합헌 결정⁹⁾과 한차례의 헌법불합치¹⁰⁾ 및 위헌 결정¹¹⁾을 한 바 있으나, 합헌결정은 물론 헌법불합치와 단순위헌결정에서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적은 없음.

3. 검토의견

현행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일정한 성범죄, 강도, 범죄단체구성 등 같은 법 제2조¹²⁾에 규정된

8) 헌법재판소 2014. 7. 24. 2013헌마423 결정. 다만, 이 사건에서 2명의 재판관(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는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의 경우 동종 전과자의 재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

9) 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4헌마340, 672, 2015헌마99(병합) 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 관련); 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3헌마830 결정(아동·청소년 성매수죄); 헌법재판소 2016. 10. 28.자 2014헌마709 결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헌법재판소 2017. 5. 25.자 2016헌마786 결정(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헌법재판소 2017. 9. 28.자 2016헌마964 결정(강간, 주거침입강간상해죄); 헌법재판소 2017. 10. 26.자 2016헌마656 결정(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소지죄) 등

10) 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4헌마340·670, 2015헌마99(병합)(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확실히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규정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를 계기로 성폭력처벌법이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일부 개정되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및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차등화함).

11) 헌법재판소 2016. 3. 31.자 2015헌마688 결정(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대해서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성폭력처벌법이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일부 개정되어 인용 결정을 받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일부 범죄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상 범죄에서 제외함).

범죄로서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¹³⁾하는 점을 감안하여 처벌과 그 절차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특정강력범죄를 마약이나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상태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자는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염려하여 이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약물중독상태’나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라는 표현은 구체화가 필요하고, 약물중독상태나 정신질환으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설령 약물중독이나 정신질환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

12)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13) 특정강력범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유죄판결만 확정되면 곧바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인권침해와 과잉조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¹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성폭력범죄 가운데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¹⁵⁾에 해당하는 범죄는 특정강력범죄가 되는데, 동 성폭력범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성폭력범죄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인바, 이를 다시 특정강력범죄법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임.

셋째, 앞서 살펴본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의 합헌 취지는 대체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본질상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

14)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보는 견해는, 대상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만 있으면 법원에 의한 재범 위험성 판단 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음[정지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험성과 무용성 -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2016); 유창훈, 형사제재수단으로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위험성 여부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4호(2019)].

15)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 흉기휴대·합동범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 2회 이상의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자가 범한 경우

요성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는 것임.¹⁶⁾ 즉, 헌법재판소는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 없이 곧바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상당 부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특정강력범죄 중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범죄[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제1호(살인 등) · 제2호(약취 · 유인 · 인신매매) · 제5호(강도 등) · 제6호(범죄단체구성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도입할지는 각 범죄의 특성, 해당 범죄의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와 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비교형량 등을 고려하여 각 범죄에 대해 구체적 · 개별적으로 논의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6

16) 헌법재판소 2014. 7. 24. 2013헌마423 결정.